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호

관보 제18516호(2015.5.2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19호(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중 부칙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5년 6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p style="text-align: center;"><b>부칙</b></p> <p>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칙</b></p> <p>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 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주택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의</p>	<p>관보 77페이지 (기준 제5조)</p>

	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	--